

부산광역시 명지국제신도시 A2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방문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상황 해제시 까지)

- 당첨자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1)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2) 비접촉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3) 방문자 명부 작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으로 인한 당사 사무실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이 주택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하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임대아파트이며, 2018년 11월 준공 이후 공실이었던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임대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내국인임대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마루,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노후화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전 파손, 지급품 분실, 누수 등 세대 하자가 있을 시 제외 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5.26.이며,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세부 단지여건, 지구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기간(7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부산 명지A2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동일 순위내 경쟁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 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kkvista>)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5.12.29. 공포·시행되었으나 당해 주택은 이 법 시행 이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2015년 06월 10일에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으로 경과 규정에 따라 (구)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 2순위자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써 전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며, 별도의 추가선택품목이나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 2순위자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당첨자 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11.15.]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계약체결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 정	11월 25(목)	11월 26(금)	11월 29일(월)	12월 03일(금)	12월 09일(목) ~ 12월 12일(일)	12월 14일(화) ~ 12월 16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별도통보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각 당첨세대	당사 임대홍보관 (커뮤니티 시설 內)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구)「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1] 공급내역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건축과-12699호(2021.11.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지구 A2블럭)
-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20층 12개동 총 870세대 중 외국인전용임대 내국인전환임대 84세대
- ▣ 입주시작예정일 : 2021.12.17. 예정
- ▣ 입주지정기간 : 2021.12.17.~2022.03.16.(3개월간)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10년 공공건설임대)

(단위 : m², 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세 대 별 계 약 면 적 (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총공급세 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 계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소 계						
국민 주택	2021000854	59.9774A	59A	59.9774	21.6938	81.6712	30.7883	112.4595	42.0019	20	20	1
		59.9583B	59B	59.9583	22.4775	82.4358	30.7784	113.2142	41.9885	23	23	2
		59.8908C	59C	59.8908	21.8909	81.7817	30.7445	112.5262	41.9413	25	25	2
		59.7268C	59C-1	59.7268	21.8575	81.5843	30.6595	112.2438	41.8264	16	16	1
	합계									84	84	6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 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세대별 세부면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층별 구분	해당동	계약 구분	임대보증금	계 약 금	잔금	월임대료
						(계약시)	('21.12.17 예정)	
59.9774A	20	전층	305	표준	95,700,000	9,000,000	86,700,000	430,000
				전환	191,400,000	19,000,000	172,400,000	92,000
59.9583B	23	전층	301,309	표준	96,500,000	9,000,000	87,500,000	430,000
				전환	191,400,000	19,000,000	172,400,000	92,000
59.8908C	25	전층	305,309	표준	95,800,000	9,000,000	86,800,000	430,000
				전환	191,400,000	19,000,000	172,400,000	92,000
59.7268C	16	전층	301	표준	95,600,000	9,000,000	86,600,000	430,000
				전환	191,300,000	19,000,000	172,300,000	92,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 면적(m²) ÷ 3.3058

- 상기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 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에 의한 주택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의 공급기준에 의거 해당 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축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상기 주택은 (구)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증처: 주택도시보증공사]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한 비율로 분담합니다.
- 상기 임대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화재보험료 등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임대보증금 잔금의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선납할인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18%.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임대기간 : 1)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50조(외국인임대주택의 공급) 제1항,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초 임대공고 후 10년 이내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분양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2) 임대개시일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 임대조건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 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4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전환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으로 분양 전환시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임)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임대조건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분양전환가능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9.01.2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주택사업승인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50조(외국인임대주택의 공급) 제④항에 의하여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최초 임대공고 후 10년 이내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분양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부산광역시제신도시 A-2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무관함.

(단위 : m²/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택지비	건축비	계
59.9774A	61,418,829	130,055,329	191,474,158
59.9583B	61,399,270	131,668,226	193,067,496
59.8908C	61,330,148	130,448,256	191,778,404
59.7268C	61,162,207	130,173,588	191,335,795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5]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하며, 1세대에서 본 단지에 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 택 형	순 위	신 청 자 격
국민주택	전주택형	1 순 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 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상기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신청순위	청 약 접 수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 발표	
	일 자	장 소 및 시 간	일 자	장 소
1 순 위	11월 25일(목)~26일(금)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2월 03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 순 위	11월 29일(월) (09:00 ~ 17:3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1) 공통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1순위 당해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 1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 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상세내역'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내역' 포함하여 발급)
	○	1.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2.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5)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당첨자 발표 및 세대개방, 계약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당첨자 서류제출(자격 검증) 기간	계약체결
일반공급 (1,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2월 03일(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09일(목) ~ 12월 12일(일) 방법 등은 당첨자발표 이후, 별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04일(토) ~ 12월 13일(월) (10:00~16:00) 대상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장소 : 임대홍보관 (커뮤니티 시설 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2월 14일(화) ~ 12월 16일(목) (3일간, 10:00~16:00) 장소 : 임대홍보관(커뮤니티 시설 內)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1.12.03.(금) ~ 21.12.12.(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1.12.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입주자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순위순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m)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개하며 60일 경과 다음날부터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후 예비입주자 관련 개인정보는 파기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홍보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6]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 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청약은 취소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등 모두가 「(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하나은행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현금 수납 및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분양사무소에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 용 기 관	납 부 계 좌	예 금 주
NH농협은행	301-0299-9038-61	(주)센테리움이앤씨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 대출안내

- 잔금 대출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1.12.17.~2022.03.16.(3개월간)

-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 이후('22.03.11)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18%,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사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 전환보증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임대차계약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8]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분양사무실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시공사인 (주)금강주택이 할 수 있으며, 그 각종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계약자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각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각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9.01.2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본 임대주택의 매각(임대 또는 일반분양)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체가 결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18%.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 여건 및 설계 관련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2018년 11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재내용으로 계약 체결시 현재 세대의 상태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명지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기, 가스, 난방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명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명지지구의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명지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명지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향후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명지지구 A2블럭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2018년 11월 입주시 명지초등학교에 배치되나, 2019년 3월에는 (가칭)명지1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명지중학교 및 9학교군 내에 학생배치가 가능함. 단 학교설립 및 수용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이 인근 학교 증축 등 수용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외 북측도로 사이에 완충녹지(폭 12~15m), 동측도로 사이에 연결녹지(폭 7~10m)가 조성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조성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동측 27~33m도로, 서측 18m도로, 남측 13m도로, 북측 34~40m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서측, 남측에는 아파트단지(최고층수 29층)가 건립될 예정이며,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면적 추가발생으로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 명지지구 남서측에 연접하여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 연접하여 명지톨게이트 및 을숙도대로, 북동측에 연접하여 명지IC 및 2번국도, 동측에 르노삼성대교가 개설되어 있음
- 명지지구 북측으로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명지지구 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명지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등에 입주자 협의 또는 기타 인허가 관청요구에 의해 추 후 설치되는 보행통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단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단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대지경계에서 3m 이격하여 차로 132m가 설치되며 부지내에 보도가 설치됨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 및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을숙도대교, 김해공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명지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서측에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주차 차단기가 계획되어 차량불빛 간섭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차량 진입(2개소)은 단지 서측, 남측 도로를 통해 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및 옥외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에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 구획에 활용될 수 있음.
- 야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생활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동출입구임),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에 문주,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부 각 동의 1층 부분은 필로티(동출입구임) 또는 1층 세대가 위치하오니,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동출입구임)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동출입구임)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동출입구임)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 석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Size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301,302,303,304동 인접 지하공간에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3~4개층(필로티(동출입구임) 포함)은 측벽과 동출입구 일부 구간의 석재마감은 제외하고 석재뿔칠과 외부용 수성페인트마감임을 인지바라며, 주동 저층부 3~4개층)의 층 사이 경계(석재뿔칠과 페인트 사이)에는 EPS몰딩이 설치됨. 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입주민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부대시설의 비품,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301~312동 전면 또는 배면)일부에 지하주차장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천창이 설치됨.
- 단지내 2개소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며,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천정)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자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동선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 별 주차위치 및 배분등 단지내 주차장은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외부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상가, 주차출입구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공동시설에는 골프연습장 및 헬스시설 등이 설치되며, 소음의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 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됨)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체육시설 사업으로 운영 할 수 없음.
- 임대계약 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

상에 대하여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건축도서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임대계약면적 등 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301,305,309동 서측 지하에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이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근린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301,305,309동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구는 아파트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됨.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지구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임대계약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임대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인쇄물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색체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의 심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동 옥상의 조형물은 본 공사시 그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02동 1층에 어린이집, 303동 1층에 경로당, 302동 전면/307동 전면에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1~312동 전면, 배면 또는 측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악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1~312동 전면, 배면에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1~312동 전면, 배면 또는 측면에 TOP/LIGHT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5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등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5,309동 서측,남측 지하에 주민공동시설(GX룸,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1,305,309동 서측 지하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2,303,306,307,310,311동 배면 및 정면에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계획(추후 변경될수있음)되어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 환기 방식(전열교환기)을 적용하고 다용도실(발코니)에 설치되며 기기가 노출될 수 있고 후면발코니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됨.
- 안방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은 벽부형, 거실은 스탠드형을 기준으로 설치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대피 공간에는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 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우 . 오수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주방 개수대 하부장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됨.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와 겹치는 타입은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청소용 급수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정의 형태, 깊이 등은 소화배관 및 환기덕트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임대계약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기준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되는 내용에만 한정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뒷면은 타일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 필터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터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터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59.7268C 타입의 경우,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 창호	적 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 용	전동기는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 효율의 1.12배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 용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단위세대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단위세대, 공용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 용	세대내 수전류 (청소용, 세탁기용 제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골드이엔지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주)골드이엔지
감리금액	1,611,008,300원	178,200,000원	520,167,000원	25,3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식회사 센테리움이앤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003호(대치동)
	등록번호	110111-4486745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금강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등록번호	110111-0313314

■ 분양사무실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10(명지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커뮤니티 시설 內(임대홍보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kvista>

■ 임대계약 문의 : ☎ 051-203-567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